

재단법인 대한민국의 축구사랑나눔재단 정관

개정 2004. 9.
개정 2005. 8.
개정 2008. 3.
개정 2009. 3.
개정 2012. 8.
개정 2013. 9.
개정 2016. 6.
개정 2018. 9.
개정 2018. 11
개정 2019. 5.
개정 2026. 3.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이하 “법인”이라 하며, 약칭 “KFA 축구나눔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대한축구협회와 축구계, 범국민적인 참여로부터 얻어지는 축구사랑 수익의 나눔을 통하여 한국축구의 균형발전과 일반사회에의 환원을 포함한 사회공헌에 기여하고, FIFA의 정신에 따른 국제축구발전에 동참함으로써, 국내외의 축구복지증진과 공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코리아풋볼파크1로 55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축구 유망주, 선수, 지도자, 심판의 양성과 경력전환 지원 및 유학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유소년 축구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육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축구관련 학술조사, 교재편찬,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4. 축구 저개발 국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축구계와 사회 전반의 소외계층 및 저소득자 지원에 관한 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②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 ④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 사업에 충당하거나, 법인 이사회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5조(이익의 제공)

- ①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할 때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장 1인
- 2. 이사 5인(이사장을 포함한다) 이상 15인 이하
- 3. 감사 2인

제7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대한축구협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법인 이사회가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감사는 대한축구협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회계 및 법률 분야 전문가 각 1인을 법인 이사회가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6조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공익법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9조(임원의 임기)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이사장은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4조(임원의 대우) 상근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 ①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법인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와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이사회 등

제16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7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한다.

제18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의결 제외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제22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법령이나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고문)

- ①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24조(후원회)

- ① 재단의 기금조성을 돕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후원회는 기금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이사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5조(사무국)

-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장 등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보수 등 근무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자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는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세입예산 초과수입액 또는 세출예산 미집행 잔액으로써 별도 적립한 금액
-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첨1과 같다.
-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자산 및 부채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및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등록하고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첨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⑤ 법인은 목적사업 용도로만 이용되는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보통재산 등 기타 원천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0조(회계의 구분)

-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며 그 세부운영원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의 경우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사업계획 및 예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결산보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산목록,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장부의 보존기한) 법인은 결산관련 서류, 재산 및 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

와 중요한 증명서류를 당해 회계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 ① 감사는 법인의 재정에 관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한 회계감사는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세무관련 신고) 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 및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① 법인은 회계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결과를 당해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35조 제2항의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의4(결산서류의 공시) 법인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4.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식보유 현황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5조의5(기부금 모금실적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법인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37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

-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한축구협회를 경유하여 해산하고,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9조(공지사항 및 방법)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축구협회 홈페이지 또는 가용한 매체수단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1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2024. 06. 03.>

제1조(시행일) 본 개정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임원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비고
이사장	김 호 곤	1951. 03. 26.	승인일로부터 2년	
이사	최 재 천	1954. 01. 06.	"	
이사	손 영 철	1960. 07. 20.	"	
이사	윤 영 설	1961. 12. 05.	"	
이사	변 석 화	1962. 11. 27.	"	
이사	이 용 훈	1965. 06. 12.	"	
이사	이 영 표	1977. 04. 23.	"	
이사	현 영 민	1979. 12. 25.	"	
이사	김 태 원	1980. 03. 02.	"	
이사	김 승 현	1981. 03. 18.	"	
이사	이 근 호	1985. 04. 11.	"	
이사	구 자 철	1989. 02. 27.	"	
이사	지 소 연	1991. 02. 21.	"	
감사	박 승 국	1966. 02. 20.	"	
감사	권 병 규	1969. 04. 05.	"	